

■ 최신 법령/규정 ■

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

심희정 변호사 | 이은영 변호사

1. 개요
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기업결합 신고요령이 개정되어, 신고 절차 및 신고 양식 등이 간소화되었습니다.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. 주요 내용

먼저, 기업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큰 '시장현황 자료'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. 이전에는 기업결합 유형을 불문하고 신고회사가 자사 및 상대회사의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. 그러나 개정안을 통하여 간이 신고 대상인 기업결합과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였습니다.

또한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였습니다.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면제하고 다만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만 기재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.

3. 다운로드 : 「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」,

「공정위, 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 위해 신고 서류 줄여」 보도자료